

검 토 의 건 서

【환경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제안이유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관리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절차 등의 규정 보완을 위하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⑨ (생략)